

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협력모델 유형	[] 협동 연구개발형	[] 공급망 연계형
	[] 공동 투자형	[] 공동 재고 확보형
	[] 그 밖의 협력 유형 (	

신청인 (A)	회사명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	기업 구분 [] 대기업 [] 중견기업 [] 중소기업 [] 수요기업 [] 공급기업 [] 기타()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	
	책임자	전화번호	전자우편	

신청인 (B)	회사명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	기업 구분 [] 대기업 [] 중견기업 [] 중소기업 [] 수요기업 [] 공급기업 [] 기타()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	
	책임자	전화번호	전자우편	

경쟁력강화 주요 내용	품목명	품목별 목표	향후 계획
	1.		
	2.		
	3.		
	기업 간 주요 협력내용 [] 공동연구개발 [] 기술이전 [] 공급망 연계 [] 시험평가 협력 [] 공동투자 [] 인수·합병 [] 공동기반구축 [] 물류 지원(공동구매, 공동물류저장 등) [] 기타		
	필요한 지원사항 [] 공동연구개발 [] 신뢰성·양산성능평가 지원 [] 정책자금(융자) [] 세제 감면 [] 기술 지원 [] 사업화 지원 [] 입지 지원 [] 신뢰성 보증 [] 규제특례 [] 기타		
	규제개선 필요 여부(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) [] 필요 [] 불필요		

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간 상호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A)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(B)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

귀하

첨부서류	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9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
------	---